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850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9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연구용역 과제 제안을 받는 주체와 관리 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연구용역 과제 제출처를 입법담당관으로 함(안 제6조).
- 연구용역 관리 부서를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10조).
- 일부 조항의 체계·자구의 오류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함(안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 및 제9조 등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

- 예산조치 : 원안과 같음.
- 기타사항 :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의회사무처”를 각각 “의회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전단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의회 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운영위원장”이라
한다)”을 “입법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운영위원장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
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일반입찰로 공모한다.”를
“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의회”를 “의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의
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”을 “관리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
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
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소관”을 “과제별 소관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
<p>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의회의 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<u>의회사무처</u>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의장은 <u>의회사무처</u>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책무) ① ----- ----- <u>의</u> <u>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의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연구용역 기본계획) ① (생략)</p> <p>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<u>홈페이지</u>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5조(연구용역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 <u>의회 홈페이지</u>----- --. 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<u>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</u> 위원장(이하 “운영위원장”이라</p>	<p>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----- ----- ----- -- <u>입법담당관</u>----- -----</p>

1. ~ 3. (생략)

②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 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정책위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과제별 소관 -----

-----.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·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행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입법정책 연구용역”이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사·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(이하 “연구용역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2. “관리”란 연구용역 과제 공모부터 종료까지 연구용역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의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 과정에 활용하여야

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의회의 연구용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5조(연구용역 기본계획) ① 의장은 매년 2월말까지 그 해의 연구용역 기본계획 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해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구용역 과제 제안)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연구용역 과제 선정) 제6조에 따라 제안된 과제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(이하 “사무처장”이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선정한다.

1.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
2.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
3.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

제8조(연구기관의 공모)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공모한다.

제9조(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) ① 과제별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 연구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 위원은 과제 관련 공무원,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

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.

③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제10조(연구용역의 관리)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. 다만, 상임위원회 소관 과제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한다.

1. 연구용역의 공정성,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
2.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
3.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

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정책위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연구용역 결과의 평가) ① 정책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, 활용도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, 그 결과물과 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준용) ①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.
제14조(표창) 의장은 연구활동 성과가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
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구용역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
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 연구용역으로 본다.